

오하이오주립대학교 한인대학원학생회 회칙

<2022. 4. 9. 제정>

<2025. 8. 29.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오하이오주립대학교 한인대학원학생회”(영문: “Korean Graduate Student Association at The Ohio State University”)를 그 정식명칭으로 하고, “KGSA”를 그 약식명칭으로 한다.

제2조 (주소) 본회는 Ohio Union, 1739 North High Street, Columbus, OH 43210을 그 주소로 한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오하이오주립대학교 내의 학생자치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오하이오주립대학교 한인 대학원생의 학업 및 생활 여건의 개선
2. 오하이오주립대학교 한인 대학원생의 신체적·정신적 역량의 제고
3. 오하이오주립대학교 한인 대학원생 상호간의 친목 도모
4. 한국 문화의 홍보와 공유
5. 지역사회에의 봉사

제4조 (차별 금지 등) ① 본회는 성적 비행에는 물론, 연령, 혈통, 피부색, 장애, 성 정체성 또는 표현, 유전 정보, HIV/AIDS 상태, 군 복무 여부, 출신 국가, 인종, 종교, 성별, 성적 지향, 보호받는 재향군인 신분 또는 오하이오주립대학교 학생자치단체 등록 지침에 따라 정해진 그 밖의 어떠한 사유에 기한 괴롭힘이나 차별에도 관여하지 않는다.

② 본회는 오하이오주립대학교와 콜린법(Collin's Law)에 따라 가혹행위에 대해 무관용(zero-tolerance) 정책을 유지한다. 모든 회원은 가혹행위가 없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행동해야 한다. 가혹행위란 회원 자격 내지 소속과 관련하여 누구에게든 그의 동의와 무관하게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피해 또는 굴욕을 야기하거나 그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활동을 일컫는다. 가혹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회원 또는 단체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회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회는 제3조 기재 목적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자격에 따라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를 정회원 또는 명예회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정회원: 오하이오주립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
2. 명예회원
 - 가. 오하이오주립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할 것이 예정된 사람
 - 나. 오하이오주립대학교 대학원에 재학하였던 사람
 - 다.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 소속된 박사후과정생·연구원·방문학자·교수 등 제1호에 기재된 지위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 라. 위 제1호 또는 제2호 가목, 나목, 다목에 기재된 사람의 동반가족

② 본회는, 절차의 신속 간이화 및 제3조 기재 목적 등을 감안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재외동포로서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 가입을 이미 신청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회원은 본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② 모든 회원은 본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관하여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 이 경우 본회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검토 결과를 해당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회원은 본회에 서면에 의하여 당해연도(“연도” 내지 “연간”은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회장의 임기를 기준으로 한 기간을 뜻한다. 이하 같다) 회계자료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 경우 본회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해당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모든 회원은 행사 참가 등과 관련하여 본회에서 부과하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 회비 액수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되어야 한다.

⑤ 모든 회원은 본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6조의2 (소모임) ① 본회는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모임을 그 구성원 모집, 행사의 홍보, 행사의 진행(시설 대여를 포함한다) 등과 관련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그 목적과 활동이 제3조 기재 목적에 부합할 것
2. 본회의 정회원 1인을 포함한 본회의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될 것. 단, 회원이 아닌 사람의 사실상의 활동 참여가 배제될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3. 당해연도에 제2항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회에 등록된 소모임일 것. 단, 가을학기 개강일로부터 60일까지는 직전연도에 등록되었던 소모임을 당해연도에 등록된 소모임으로 간주한다.

② 정회원은 소모임의 명칭, 목적, 구성원 명부(본회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구성원을 구분하여 표기할 것), 당해연도 활동 계획의 개요를 포함한 문서파일을 제출함으로써 소모임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회는 제3조 기재 목적과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요건을 감안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등록 신청 수리 여부를 해당 회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탈퇴 및 징계) ① 모든 회원은 서면으로 의사를 명시함으로써 본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본회는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회원의 자격을 기간을 정하여 정지하거나 그를 제명할 수 있다.

1. 제6조 제4항, 제5항에 기재된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중대하게 손상한 경우

제3장 임원, 임원회 및 지도교수

제8조 (임원의 구성) 본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2. 부회장
3. 회계
4. 일반 임원

제9조 (회장의 권한과 책임)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사무 일체를 집행하고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② 회장의 임기는 매해 봄학기 졸업일(Spring Commencement) 후 15일부터 다음해 봄학기 졸업일 후 14일까지로 하고,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제10조 (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정회원들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전 70일 이전에 정회원의 자격을 획득하여 유지하는 사람 중에서 선출한다. 위 선거는 정보통신망에 의하는 방법으로 실시될 수 있다.

② 당해연도 회장은 차기 회장 임기개시일 전 70일부터 55일까지 차기 회장 선거 후보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2회 이상 행하여야 한다. 위 공고에는 제3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차기 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성명, 소속학과, 학위과정명, 입학연도, 자원 동기, 임원진 구성에 관한 대략적 계획, 공약 및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포함하는 문서파일을 임기개시일 전 5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회원의 자격이 있음과 이를 차기 회장 임기 동안 유지할 것임을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1인 이상이 차기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경우 당해연도 회장은 차기 회장 임기개시일 전 40일과 30일 사이의 임의의 날로 선거일을 신속하게 확정하고

(필요한 경우 여러 날로 정할 수 있다), 이를 선거일 전 7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1. 4시간 이상으로 정한 투표일시(단, 오후 9시부터 오전 9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도 4시간에 이르러야 한다)
 2. 주된 캠퍼스 내 또는 그 인근으로 정한 투표장소(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투표 참여절차의 안내)
 3. 각 후보자의 성명, 소속학과, 학위과정명 및 입학연도
 4. 각 후보자가 제3항과 같이 제출한 문서파일
 5. 정회원에게만 선거권이 부여된다는 취지
- ⑤ 투표 및 개표절차는 당해연도 임원들이 당해연도 회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한다. 단, 각 후보자가 정회원 중에서 1인씩 추천한 참관인이 투표 및 개표절차 전반을 참관할 수 있어야 한다.
- ⑥ 후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유효투표에서의 최다득표자를 회장 선거의 당선인으로 한다. 단,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연도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해당 후보들 중에서 당선인을 정한다.
- ⑦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찬성·반대를 그 투표사항으로 하고, 20인 이상의 유효투표가 행해지고 찬성표가 그 유효투표수의 과반에 이른 때에 한해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⑧ 제6항 내지 제7항에 따라 선거 또는 임원회의 의결로 당선인이 결정된 경우 당해연도 회장은 이를 그 결정이 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⑨ 후보자가 없거나 유일한 후보자가 당선인이 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차기 회장의 선출에 이르지 못한 경우 당해연도 회장은 이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회장이 차기 회장을 임명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 ⑩ 당해연도 회장은 차기 회장에게 본회의 운영과 재정 등에 관한 일체의 기록과 자료(정보통신망상의 계정과 금융계좌 등을 포함한다)를 차기 회장 임기개시일 전일까지 성실하게 공개하고 인계할 책임이 있다.
- ⑪ 당해연도 회장은 그 임기만료일 전 3일까지 당해연도 결산 내역(임기만료일 전 10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⑫ 모든 정회원은 제8항 및 제9항의 공고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선거 절차 및 결과에 관하여 서면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본회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의의 요지와 검토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1조 (부회장, 회계 및 일반 임원) ① 부회장, 회계 및 일반 임원은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자원하는 사람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 또는 궐위된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계는 회장의 승인 하에 본회의 재정을 집행 및 관리하고, 회장과 부회장 모두 사고 또는 궤위된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이 사고 또는 궤위된 때 부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일반 임원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제반 사무에 관하여 회장, 부회장 및 회계를 보조한다.

⑤ 부회장, 회계 및 일반 임원이 차기 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문서파일을 제출하기 전에 임원의 지위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회) ① 본회에 임원들로 구성된 임원회를 두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임원회는 의장의 소집(단, 제6호의 경우 회장에 대한 해임안의 발의를 위한 임원회에 한하여는 부회장과 회계의 합의에 따른 공동소집에 의한다)에 따라 소집되고, 재적인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재적인원이 10인 미만인 때에는 2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분의 1의 찬성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단,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의 결정에 의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의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의 찬성에 의하고, 제6호의 사항이 가결된 경우 해당 임원은 즉시 그 직무가 정지된다.

1. 본 회칙의 개정안의 발의
2. 본회의 해산안의 발의
3. 제5조 제1항에 따른 정회원 또는 명예회원 자격의 인정 여부
4. 제6조 제2항에 따라 개진된 의견, 제6조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 요구, 제10조 제12항에 따라 제기된 이의에 대한 조치
5. 제7조 제2항에 따른 회원의 자격정지 내지 제명
6. 본 회칙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그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당한 임원에 대한 해임안의 발의
7. 제10조 제6항 단서에 따른 당선인의 결정
8. 제15조 제2항에 따라 정기총회에서 보고될 연간 사업안 개요의 확정
9. 제6조 제4항에 따른 회비의 책정
- 9의2.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소모임 등록 신청 수리 여부의 결정
- 9의3. 제20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 방법의 결정
10. 제1호, 제2호, 제6호 사항 이외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의결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의 결정
11.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임원회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할 수 있고, 비동시적인 연락에 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출석이나 의결권의 행사가 위임될 수는 없다.

제13조 (지도교수) ① 회장은 오하이오주립대학교의 교원 중에서 본회의 지도교수를 위촉하여야 한다. 지도교수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오하이오주립대학교의 학년도에 한하나, 본회에 의한 해촉이나 지도교수의 사임 내지 자격상실 등 사정이 없는 한 매 학년도 갱신되는 것으로 본다.

② 회장은 제12조 제2항 제6호 및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임원의 해임이나 제7조 제2항에 따른 회원의 자격정지와 제명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지도교수와 상의하여야 한다.

③ 지도교수는 제2항에서 정하는 상의에 응하는 등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지도하고 조언할 책임이 있다.

제4장 총 회

제14조 (설치 및 구성) 본회에 정회원들로 구성된 총회를 두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15조 (종류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의장은 매해 가을학기 개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위 정기총회에서 임원회 의결에 의하여 확정된 당해연도 연간 사업안의 개요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제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각 소모임에 구성원 모집 등을 위한 홍보를 행할 적당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제12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에 따른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본 회칙의 개정, 본회의 해산안, 임원에 대한 해임안이 발의된 경우
2. 제12조 제2항 제10호에 따른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이 결정된 경우
3. 총회 구성원 20인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하고 연서한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위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가 본 회칙의 개정, 본회의 해산, 임원의 해임인 때는 각각의 안이 발의된 것으로 본다)

④ 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최일 전 7일까지 일시, 장소, 목적사항, 소집의 이유를 포함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그러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 제한에도 불구하고 다른 적당한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16조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출석인원 과반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다만 제2호, 제3호는 출석인원 3분의 2의 찬성에 의한다.

1. 본 회칙의 개정
2. 본회의 해산
3. 본 회칙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그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당한 임원의 해임
4. 제12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부의된 그 밖의 사항
5. 제1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총회 구성원들에 의하여 부의된 그 밖의 사항

② 총회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할 수 있다. 그러나 출석이나 의결권의 행사가 위임될 수는 없다.

제5장 재 정

제17조 (수입) 본회의 수입은 회비, 기부금,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8조 (지출) 본회의 지출은 제3조 기재 목적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하고, 그 내역이 투명하게 기록되고 증빙되어야 한다.

제19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해 봄학기 졸업일 후 15일부터 다음해 봄학기 졸업일 후 14일까지로 한다.

제20조 (청산절차) 본회가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한 뒤 다른 학생단체, 공익단체, 또는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보 칙

제21조 (보칙) ① 본 회칙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통상적 관례와 조리에 따른다.

② 본회의 운영은 오하이오주립대학교가 정한 규율을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본 회칙의 내용과 위 규율 사이에 명백한 충돌이 있고 그 충돌사항과 관련하여 본 회칙의 개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급박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는 본 회칙이 명시한 바에도 불구하고 위 규율을 우선할 수 있다.

③ 본 회칙은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 등록된 학생자체단체로서 가지는 헌장(constitution)과 규칙(by-law)을 포괄하는 성격을 가지고, 오하이오주립대학교의 정책과 요구 등에 비추어 유관한 부분 및 그 명백한 해석이 다른 본회의 헌장(constitution)으로 간주될 수 있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2022. 8. 15.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 시행 당시 본회의 임원은 본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